



채용정보 > 채용공고

채용공고

공고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단시간근무자(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접수기간	2026.04.30(목) 00:00 ~ 2026.05.14(목) 12:00		D-1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단시간근무자(장애인제한경쟁-원무직)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직급	인원	자격요건	근무시간	계약기간	업무내용
단시간원무직	A1	1명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04.5시간/월(반일제)	2026.6.1. ~ 2026.6.30.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중앙공급 보조 등 (직무기술서 참고)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계약기간의 경우 향후 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남자는 임용 시작일(26.6.1.) 병역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기출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단, 자격·면허 등 자격요건이 있는 직종의 경우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상기 지원분야 중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중복지원 불가)
- 상세 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 동시 진행 중인 본원 채용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합격취소)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인사지원서 등에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신분)관계, 성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일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의 경우 최종 합격 이후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지원분야의 직무기술서, 인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2. 지원방법

- 가. E-mail 접수
- 제출처 : apply@snuhd.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총무과 인사복지팀)

- 나. 오프라인 접수
- 제출처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신관 6층 총무과 인사복지팀
- 주소 : 서울시 중구구 대호로 101(연건동)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 3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 제출방법 : 위 주소로 우편발송(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 다. 유의사항
- E-mail 또는 오프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지원 (인사지원서 양식 변경 금지)
- E-mail 제출시 메일제목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작성할 것
※ 메일제목 : 장애인제한경쟁-성명(예시 : 장애인제한경쟁_김OO)
- 방문접수 가능시간 : 월~금 09:00 ~ 18:00
※ 인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6.5.14.)은 방문접수 또한 12시 마감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3. 전형방법

-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면접전형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홈페이지 게시 등)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

- 가. 서류전형
① ※ 지원자 전원 차기 전형 응시 기회 부여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자격·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을 기입하지 않은 지원자
- 인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출신지역, 가족관계, 성별, 의무복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 '차기 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의미 없는 글자 반복,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 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등)
- 서류전형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지원자
③ 응시인원이 합격자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음(단, 응시자격 요건은 충족해야함)

나. 면접전형

- ①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② 면접전형 평가결과, 평균 취득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신체검사

- 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②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의사 소견서 필요)

라. 예비합격자

- ① 최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합격자 배수

직종	채용 예정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면접전형 합격인원	예비 합격인원
단시간원무직(장애인제한경쟁)	1명	제한없음	1명	2명

바. 동점자 사정 기준

- ①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함
② 단,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조대상자
-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
- 직제규정상 상위 면접위원순의 면접평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신규 임용예정자 결정

5. 전형일정

일정	일시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6.4.30(목) ~ 2026.5.14(목) 12:00	15일
1차 전형(서류전형) 결과발표	2026.5.15(금)	
2차 전형(면접)	2026.5.19(화)	
2차 전형(면접) 결과발표	2026.5.21(목)	
신체검사/재중검검위원회	2026.5.22(금)	
입용	2026.6.1,자	

6. 제출서류

가.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1부

다. 범죄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근무기관 폐업 등 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등 제출 가능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응시 시 제출하며,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인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절 반영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인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누락, 증명서 미제출, 오기재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직위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파산선고후건인, 파한정후건인 또는 파복정후건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위임이 제한된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접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직위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 여부를 취소한다.
1.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2. 인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4.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6.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제1항, 제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지파별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다.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우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마.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분원, 수탁기관 포함)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바.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사.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합격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복지팀(02-6256-3491)으로 문의

2026. 4. 3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첨부파일	1. 직무기술서 원무직 장애인제한경장.pdf
	2. 플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검토기준.pdf
	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채용 이의신청서.hwp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채용서류 반환장구서.hwp
	5. 인사지원서.hwp

